

2020. 3. 11.

**파기원 제1민사부**

10-13.715, Publié au bulletin

#초상권

#사생활

#전직 장관

#공인

#휴가



## I. 사실관계 및 절차

1. 항소심 판결(2018년 11월 9일 베르사유(Versailles) 법원)에 따르면 “S. H. and V. L. Love story in San Francisco”라는 제목의 기사가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이하에서는 HFA)에서 2014년 9월 17일에 발행한 잡지인 파리마치(Paris Match) 제3408호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는 (프랑스)정부에 대해서 두 명의 장관이 장관직을 공동으로 사임하고 난 20일 후에,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동반 체류한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이들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산책하는 4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2.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가 사생활을 비롯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직 장관인 S. H.는 파리마치가 소속된 회사인 HFA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HFA 회사는 Lagardère média news(이하에서는 Lagardère 회사)의 자회사이다.

## II. 상고 이유

3. 두 번째 상고 이유에 따른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014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 파기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4. 첫 번째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판단한다. Lagardère 회사는 항소심에서 파리마치 잡지(제3408호)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자회사인 HFA 회사에 9,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명한 부분과 아스트랭트(astreinte)<sup>1)</sup>로 소송 대상인 사진의 배포,

---

1)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에는 아스트랭트(astreinte)라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는데, 특히 압류 개시 전의 아스트랭트는 프랑스민사집행법 제L.131-1조 내지 제L.131-4조 및 제R.131-1조 내지 제R.131-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들은 민사집행에서 압류 개시 전에 이행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아스트랭트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판사가 주된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금전이행명령을 의미한다. 프랑스민법이나 프랑스민사집행법은 아스트랭트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민법 제1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이행강제금(astreinte)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복제 및 인터넷상의 게재 금지를 명한 부분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불복하였다.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공익적 논쟁에 대한 기여, 관련 당사자의 명성, 당사자의 사생활 관련 기사의 내용 및 영향 및 보도된 기사의 정보 또는 사진의 취득에 필요한 부당한 침입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S. H.와 V. L.의 애정 관계에 관한 사진과 기사가 초상권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에서는 S. H.가 ‘경제, 생산성 회복 및 디지털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임에도, 최근 내각 개편 이후 열린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두 전직 장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적이고 애정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두 전직 장관 사이에 사적인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였고, 해당 두 장관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사회당 쇠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내부 갈등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대중이 알아야 하는 법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항소심의 판결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sup>2)</sup> 및 제10조<sup>3)</sup>를 비롯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자유에 관한 프랑스민법 제9조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 III. 파기원의 답변

5.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에 관한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동일한 규범적 가치를 가지는데, 판사는 두 권리 사이에서 형평을 찾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 가장 보호할 최상의 이익이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이들 두 권리 사이에서 형평을 찾기 위해서는, 판사는 해당 기사에 대한 공익적 논쟁의 기여도, 관련 당사자의 명성, 해당 보도의 목적, 관련 당사자의 과거 행동, 문제가 되는 해당

---

규정하고 있다(Civ. 2e, 24 septembre 2015, pourvoi n°14-14977 14-14978, BICC n°836 du 15 février 2016 et Legifrance [<http://www.dictionnaire-juridique.com/definition/astreinte.php>]). 따라서 아스트레인트는 이행강제금으로서 이행을 위한 간접적 강제 혹은 제재를 위한 수단을 의미하고 흔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부과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경우에 소송절차상 또는 판결 시에도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문희, “프랑스 집행관(huissier de justice) 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2020, 544면).

- 2) 제8조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3) 제10조의 표현의 자유.

게시물의 내용, 형식 및 영향과 보도된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앞서 언급된 기준 각각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1re Civ., 21 mars 2018, pourvoi n° 16-28.741, Bull. 2018, I, n° 56).

6.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간의 애정적이고 감정적 측면의 생활은 엄격한 사생활의 영역이며, 만약 대중이 민주적 사회에서 본질적인 권리로서, 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특정의 상황에서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몇몇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명성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논쟁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CEDH, arrêt du 10 novembre 2015, T... et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c. France [GC], n° 40454/07, §§ 99 et 100).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단지 몇몇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도된 기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사 전체에 대한 이해 및 기사 내용의 문맥을 통해서 해당 기사의 보도와 공익적 문제의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ibid., § 102). 또한, 해당 기사의 본질적 주제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기사의 주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CEDH, arrêt du 29 mars 2016, Bédât c. Suisse [GC], n° 56925/08, § 64).
7.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만약 문제가 되는 보도의 주제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보도된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과 기사 내용의 문맥을 통해서 게재된 정보의 내용이 기사의 주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인(personne publique)의 사생활 또는 공인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8. 앞선 판결에서는, 문제가 된 해당 기사가 S. H.와 V. L.의 정부에 대한 최근의 장관직 사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두 전직 장관의 애정 관계가 이들의 장관직에 대한 공동 사임의 중요 원인임을 문제 삼지 않고, 이러한 정보가 단지 캘리

포니아에서의 관련 당사자들의 사적인 체류를 문맥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S. H.와 V. L.의 사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파리마치의 기사는 이들 각자의 정치적 임무와 포부 사이에서 괴리의 결과라거나, 이들의 사임의 결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암시가 아니라, 파리의 정치적 혼란과는 관계없는 두 전직 장관의 애정 관계를 그들 잡지의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9. 이러한 객관적 사실 및 평가에 대해서, 항소심은 두 전직 장관인 S. H.와 V. L.의 공동 사임은 공익적 주제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기사는 그들의 애정 관계에 대한 폭로 및 미국에서의 사적인 체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해당 주제에 관한 공적인 논쟁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항소심은 두 전직 장관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해당 기사가 전직 장관 S. H.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었다.

10. 따라서 상고 이유는 근거가 없다.

앞서 제기한 판단을 근거로, 파기원은 :

상고를 파기 환송한다 ;

Lagardère 회사에 소송 비용의 지불을 명한다 ;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700조를 적용하여, Lagardère 회사의 상고를 기각 및 파기하고, S. H.에 대해 3,000유로를 배상할 것을 명한다 ;

따라서 파기원의 제1민사부는 이같이 2020년 3월 11일 판결을 선고한다.

#### IV. 파기원의 추가 판단 이유

HFA 회사에게 파리마치 잡지 제3408호를 통해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S. H.에 대한 9,000유로의 지불과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한 배포, 복제 및 인터넷상의 게재 금지 금지를 아스트랭트로 명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Lagardère 회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추가로 판단한다.

## 첫 번째 추가 판단

프랑스민법 제9조 및 유럽인권협약 제8-1조는 명성, 재산 또는 직무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 및 초상권을 보장하고; 동협약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고;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비롯하여 한편으로는 초상권을 존중할 권리,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동등한 규범적 가치를 가지며; 이들 권리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과 경우에 따라서 이들 법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고 가장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판사의 임무에 속하고; 이들 권리 사이에서 형평을 모색하기 위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결과이며, 공익적 논쟁에 책임이 있는 기사 보도의 기여, 기사 보도의 목적, 관계 당사자의 과거, 보도의 행동, 내용, 형식 및 영향, 경우에 따라 사진이 찍힌 상황을 고려할 이유가 존재하며; 일반적인 관심사, 관련자의 악명, 보고서의 주제, 관련자의 이전 행동, 해당 출판물의 내용, 형식 및 영향을 비롯한 사진 촬영 상황; 개인의 공적 성격 또는 명성은 사생활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S. H.는 장관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는 이러한 경우에, 시사적인 또는 공익적 논쟁으로써 정당화되지만; 파리마치 잡지 제3408호의 표지에는 전직 장관인 V. L.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다른 전직 장관 S. H.가 함께 있는 사진과 제목이 게재되었고; 해당 기사의 제목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애정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들 두 전직 장관이 손을 잡고 샌프란시스코를 걷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두 전직 장관임을 알 수 있는 이들의 뒷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잡지의 2면에 걸쳐 게재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S. H.와 V. L.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이 함께 게재되었으며, “지난 일요일, 서로 손을 잡고, 미국인들이 “서쪽의 파리”라고 부르는,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리스코(Frisco) 거리에서”라는 부제가 추가되었으며; “서로 손을 잡고”라는 상세한 설명은 이들이 연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보도된 기사는 “내각 개편 이후에, 이들 두 전직 장관은 연인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선택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만(灣)에 위치한 이 도시는 세상의 추방자들을 환영한다. 금을 쫓는 사람들이 있던 시기에 확립된 전통이다. Valls 정부<sup>4)</sup>에 대

4)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세 번째 내각으로, Manuel Valls가 수상이던 시기를 가리키며, 2014년 3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의 4개월 26일의 짧은 기간 동안 존치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짧은 기간의 내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해 최근에 사임한 - 퇴출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 전직 장관의 유배는 최초로 이주해 온 유럽인들에 비해 가볍다; 단 한 번이라도 연대는 은둔과는 함께할 수 없다. 교수자격이 있는 작가, Valois 거리의 임시 주인인 V. L.과 변호사, 국회의원, 사망한 생산재 건부의 사도인 S. H.는 “패배자들의 지침서”의 저자인 Emil Cioran이 남긴, “우리는 운명이 부여하는 의무를 회피할 때 비로소 하루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격언의 내용을 행복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하였다; 원심의 판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각 개편에 대한 암시는 잡지에 보도된 기사와 사진의 시간상 배치 정도와 관련이 있을 뿐이며; 해당 기사와 사진은 당사자인 S. H.와 V. L.의 전직 장관들의 지위에 대한 언급 외에는 이들의 사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기사는 내각 개편 이후에 시작된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 이들 전직 장관의 사적인 관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두 면에 걸쳐 게재된 다른 세 장의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사진에는 S. H.와 V. L.의 사임 당시의 상황을 짧게 회상하는 간략한 기사와 S. H.가 U. I.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고; 해당 기사가 “정치적 논쟁이나 파리의 스캔들과는 멀리 떨어져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보이는 이들 커플”이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사는 최근의 정치적 전후 관계와는 관계없이 이들 두 전직 장관의 사적인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사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정치적 논쟁을 강조할 수 없으며, 잡지의 독자들은 파리의 정치적 혼란과는 거리가 먼 S. H.와 V. L.의 애정 관계에 관한 사실만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문제가 된 해당 잡지의 출간 당시에, S. H.가 이러한 사적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와 같은 폭로는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고, 해당 잡지의 출간 이후에 이들 관계가 유명해졌는지에 대한 사실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논쟁이 되는 사진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보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좀 더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를 연장하는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미국만큼 먼 외국에서의 휴가 동안, 당사자는 자신이 불편한 시선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 이들 사진이 잡지에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앞선 판결을 검토하고 살펴봄으로써 해당 기사의 보도로 인한 S. H.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추가 판단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프랑스민법 제9조는 개인의 명성, 재산, 현재와 장래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초상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는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안에서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앞선 이들 두 원칙(사생활 및 초상권을 존중받을 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화는 대중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공적 생활과 관련된 요소가,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되거나 뉴스나 공익적 논쟁으로 정당화되는 정보 및 이미지가 그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적 생활이나 공식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나 이미지의 공개에 반대할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비롯하여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의 한계 또한 정할 수 있다; 파리마치 잡지(2014년 9월 11일에서 2014년 9월 17일) 제3408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S. H.와 V. L.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과 S. H.가 V. L.을 안고, 거리를 산책하면서도 사진기를 조심히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으로 잡지의 표지 전면을 장식했다; 잡지는 4면을 할애하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동안 S. H.와 V. L.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을 표기하면서, “내각 개편 이후에, 이들 두 전직 장관은 연인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선택했다.”라는 요약문으로 기사를 시작하였으며, “Valls 정부에 대해 최근에 사임한 -퇴출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전직 장관의 유배”는 20일 전에 “되찾은 자유 덕분에 프랑스 정치 무대 뒤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예기치 않게 새롭고 신비한 현상인 인디언 썸머를 준비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기사는 S. H.와 V. L.가 거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거나,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4장의 사진이 중심이 되고, 이들 중 하나의 사진에서는 두 전직 장관이 다른 관광객들 곁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담겼으며, “지난 일요일, 서로 손을 잡고, 미국인들이 “서쪽의 파리”라고 부르는,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리스코 거리에서”, “9월 7일 일요일 정오 무렵, 이들 커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롬바드 거리를 산책했다(...)”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잡지에서 보도된 기사는 S. H.와 V. L.의 감정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들이 정부의 개편 이후에 “연인으로 머물기 위한 목적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체류를 기술하면서, 두

전직 장관들이 Valls 정부에 대해서 동반 사임했으며, 이들의 사임 20일 전에 G.가 사임했다는 사실까지도 소환하면서; S. H.와 G.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성명을 낸 데에 이어, 정부에 대해 사임했다는 사실을 Valls 정부가 발표했던 시점이자, V. L.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장관들과 함께 연대해서 새로운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던 시점인, 2014년 8월 25일에서 2주가 지난 후에 해당 기사가 실린 잡지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만약 기사가 S. H.와 V. L.이 공동으로 사임하고 “프랑스 정치의 무대 뒤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뒤로하고 떠났던”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당사자들의 사적인 체류의 시간을 서술하기 위한 정보가 기사를 통해 제공되었어야 함에도, 정작 해당 기사는 두 전직 장관의 연결 관계에 관한 논쟁이나, 정부에 대한 공동 사직의 이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전직 장관들의 감정적 관계가 그들의 동반 사임의 유력한 원인인지, 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이 동반 사임의 원인이 아닌지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S. H.와 V. L. 각자의 정치적 비전, 직무 및 야망에 비추어 이들의 사임이 그들 사이의 이러한 감정적 관계의 결과라는 어떠한 논쟁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비록 S. H.와 V. L.뿐만 아니라 G. 또한 공동으로 사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이러한 사임에 따른 정부 내각의 개편 이후 활발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잡지에 보도된 기사는 이러한 활발한 논쟁을 제공하지 못했고, 단지 S. H.와 V. L.의 감정적인 관계, 다시 “되찾은 그들의 자유”와 “연인들의 사적 체류”만을 폭로하는 데에 기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사에서 자세히 기술된 S. H.와 V. L.의 감정적 관계에 대한 폭로는 시사적인 논쟁을 제외하면 대중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 H.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리를 산책하는 것과 같은 사생활을 보내는 시간에 몰래 사진을 찍고, 이를 보도하여 이들 두 전직 장관의 감정적 관계를 폭로하는 문제는 S. H.가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데에 동의한 사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고, 대중에 대한 S. H.의 이러한 태도가 본인의 사적 관계를 대중에게 알려도 된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는 사진들의 복제 또한 청구인 S. H.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며; 문제가 된 출간물인 각 잡지에 대해 9,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HFA 회사에 명했다;

1. 사생활 침해는 보도된 정보를 통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익, 보도된 관련 당사자의 명성, 사생활 보도의 내용 및 영향을 비롯해 보도된 정보 또는 사진을 찍기 위한 부당한 개입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해야 하며; S. H.와 V. L.의 애정 관계를 드러내는 언론 기사와 사진의 출간이 사생활 및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해당 기사가 최근 내각 개편 이후 시작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두 전직 장관의 사적인 애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록 청구인인 S. H.가 경제, 생산 회복 및 디지털 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인이고, 정부의 정책적 노선에 반대하는 공동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판적인” 두 전직 장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두 장관이 동시에 사임 결정을 한 것이 과거 사회당 쇠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여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도하는 것에는 합법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10조와 프랑스민법 제9조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2.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대중에 대한 정보 보도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익, 관련 당사자의 명성, 사생활 보도의 내용과 영향 및 보도된 정보 또는 사진의 부당한 취득에 관한 논쟁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지에 게재된 S. H.와 V. L.의 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사와 사진의 보도가 이들의 사생활 및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사의 내용이 어떠한 정치적 논쟁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는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의 휴가 동안,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없이, 자신이 불편한 시선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잡지에 게재된 사진 중 하나에서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S. H.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사적 관계를 스스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제10조 및 프랑스민법 제9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박탈했다(ECLI:FR:CCASS:2020:C100187).